

2007년 7월 1일 시행

제13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호적법) : 50문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7. 7. 2.(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7. 7. 2.(월) 10:00 ~ 2007. 7. 5.(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7. 18.(수)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2007년 7월 1일 시행
제13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7. 7. 2.(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7. 7. 2.(월) 10:00 ~ 2007. 7. 5.(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7. 18.(수)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는 8차 개헌(1980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④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⑤ 국정감사·조사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문 2】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중급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이후의 불복기간 진행은 정지된다.

【문 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문 4】 공무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생활보조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학자금지급 등의 혜택은 주어지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및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지만, 위 법률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5】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②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원리에 의한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된다.
- ③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집회 내지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폭력 등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 ④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 ⑤ 야간에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 관하여 다른 옥외집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6】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문 7】 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 ②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2대원칙이며, 이 원칙은 헌법이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방법이나 헌법의 직접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 ③ 본질적내용침해금지 원칙에서 본질적내용은 각 기본권마다 가지는 특유의 내용을 의미하며, 근로3권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근로3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뜻한다.
- ④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사이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 8】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존재한다.
- ②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도록 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소(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사립학교법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⑤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이 국민들에게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률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③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법률규정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행정사에 대하여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반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10】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 ③ 공무원이 퇴직 후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 ④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납부기한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일보다 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문11】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1988. 2. 25. 시행)이 그 직전의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 10. 27. 시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에서의 공판진술권을 신설하였다.
- ② 국가는 여자, 모성(母性), 노인,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 ③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 ④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문12】 현행 헌법상의 교육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가 교육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재정의 법정주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의무취학 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초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기준연령 미달이지만 지적으로 성숙한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 ③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 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에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의 각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에 상당히 마련 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규정은 학부 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 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대학자치의 내용으로서 대학은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진다.

【문13】 국제질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상호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다.
- ③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예로는 집단학살(genocide)금지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 부전조약(1928) 등을 들 수 있다.

【문1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우리 헌법상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9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선거에 관한 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업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밖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당적을 가지는 것은 허용된다.

【문15】 평등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3항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배된다.
- ③ 시혜적 법률과 같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 ⑤ 현행 헌법상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권청구의 제한은 헌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문16】 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당선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한다.
-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④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 외의 범죄로 인하여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국회 입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문17】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사전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현행법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문18】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문19】 다음 중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에 대한 입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독점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진다.
- ③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문20】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 ②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행정작용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행정입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④ 위임입법의 범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시행령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은 당연히 유효하고 당해 사건에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 상법 30문 】

【문21】 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④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 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문22】 다음 중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23】 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와 같다.
- ④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와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그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 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문24】 선박우선택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상법 제861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②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과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그 발생 내지 설정 순서에 의한다.
-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문25】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 ②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 ④ 선박소유자가 아닌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등은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 ⑤ 상법 제5편 제2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26】 수표의 소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 ②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다는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③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수표의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문27】 다음 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 의사표시으로써만 회사를 대표한다.
- ③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임기는 이사의 임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문28】 다음 중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지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 ①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②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 ③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 ④ 회계장부 열람권
-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문29】 다음 중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이라 타인의 계산 및 명의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엄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계약의 요령 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문30】 다음 중 수표법상의 수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① 지급인의 명칭
- ② 지급지
- ③ 만기
- ④ 발행일과 발행지
- 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문31】 다음 중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 ①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 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32】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다.

【문33】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②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④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 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34】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발행·교부하는데, 화물상환증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 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保證渡) 또는 가도(假渡)라고 한다.

【문35】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⑤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36】 회사설립에 관한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③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 ⑤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37】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된다.
- ⑤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문38】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병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③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39】 다음 중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0】 다음 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② 청산인의 선임
- ③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④ 정관의 변경
- ⑤ 자본의 감소

【문41】 다음 중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상법상의 책임은 없다.
- ③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④ 모회사의 감사라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 ⑤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문42】 다음 중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합병은 변경등기나 설립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43】 다음 중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건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중개인은 달리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③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⑤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44】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대표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
- ②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외국회사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 ④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영업소의 설치 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문45】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문46】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③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④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47】 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48】 다음은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창고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치물의 출고 이전에는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9】 다음 중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③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⑤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건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문50】 다음 중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②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 ④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 ⑤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고, 배서가 된 후에는 채무자가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선의의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 합유와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④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문 2】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③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④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문 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환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 ④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문 4】 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달리 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③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이다.
-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문 5】 사단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다.
- ② 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총회에서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 ⑤ 해산한 사단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문 6】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③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④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주채무자의 부락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7】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 ②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 ③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무능력자라면 그 무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문 8】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혼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문 9】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 ③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10】 입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배우자가 없는 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 ③ 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 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11】 계약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통설·판례에 의함)

-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양수인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③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채권자
- ④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 ⑤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문12】 다음 중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 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실적·일시적 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 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여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구상권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3】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문14】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②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1차로는 친권자이고 제2차로는 후견인이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문15】 동시이행의 관계에 관한 판례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문16】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③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④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⑤ 상속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문17】 위임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문18】 자주점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인 반복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⑤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문19】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무능력자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다.
-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문20】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판례에 의함)

- ①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②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 ③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 ⑤ 문제된 동산이 도난된 금전인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1】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 ②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③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조건의 성취가 미확정인 권리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2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③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문23】 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④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정행위에서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문24】 물권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당사자의 계약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
- ②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③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도 소멸한다.
- ④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동산에 관한 점유개정은 무효이다.

【문2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 ②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문26】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2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국가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문28】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증축, 개축,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④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문2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그 발생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 ② 임금채권도 양도 가능하며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다.
- ⑤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문3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 ②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롭게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무효,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⑤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31】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②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귀속된다.

【문32】 부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②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기존건물의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문33】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 무효이다.
- ③ 율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율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문34】 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권자는 상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35】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권자에 대해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할 때까지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36】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할 수 있으나 직접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3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문38】 친생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
- ②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 ③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⑤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3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하다.
- ②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 ③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문40】 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의하면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호적법 10문 】

【문41】 인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 ② 혼인중인 처가 남편과 별거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없다.
- ③ 부가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인지신고서에는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인지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입적할가가 없으므로 인지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 ⑤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으나,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의무자가 그 분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42】 다음은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재판상 파양신고, 재판상 이혼신고와 같은 호적신고의 경우에는 호적신고의무자가 아닌 소제기 상대방도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호적신고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는 임의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없다.
- ③ 취적의 판결이 2007. 3. 2. 확정되고, 그 판결을 2007. 3. 9. 송달받은 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일이 기재된 신고서에 의하여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출생자의 이름을 아직 작명하지 못한 경우 우선 ‘미정’으로 신고하고 추후 작명이 되는 대로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름을 호적에 기재할 수 있다.
- ⑤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와 호적사무관장자가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제적부 등에 의하여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또는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나, 신고사항의 진실성과 신고의사의 진의성까지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문43】 다음은 개명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출생신고시 한글로만 신고된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물론 한자로만 신고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따로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므로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식으로 그 혼인사유 기재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원래의 호적에 이기함으로써 이중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여자가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비록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부모가 사망한 의사능력 없는 자의 호주승계신고를 후견인이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 읍, 면의 장은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되었음이 호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유무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기재할 수 있다.

【문44】 다음은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에 의한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 ② 조정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③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유언증서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 ④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자의 모(母)사이에 친권자를 정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협의서
- ⑤ 생부가 임의인지한 경우, 생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45】 다음은 호적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는 호적신고와 같이 우송 또는 사자(使者)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 ②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 ④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동일하여 그 선후를 판명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46】 혼인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혼인신고서류의 반류를 요청하면 혼인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 ②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미성년자인 혼인당사자에게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호적예규의 입장이다.
- ③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호적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호적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④ 사실혼존재확인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창설적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본적지 호적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문47】 다음은 사망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으로는 신고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 ②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잔류자)로 기재된 자를 호적에서 제적하려면 원칙적으로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가 그 자의 본적지 가정법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아야 한다.
- ③ 망자의 사망 후 1980년경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만 사망정리가 되고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유루된 경우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당시의 사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본적지의 호적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루된 호적의 기재를 직권 정정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의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사람에 대하여 취적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 그 사망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문48】 다음은 호적기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이 사망하여 친가에 복적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혼사유와 사망사유는 복적된 가에 이기한다.
- 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
- ③ 혼인 중에 있는 남자가 중혼을 한 경우, 남자의 신분사항란에 후혼의 혼인사유를 기재함과 동시에 후혼의 처를 혼인입적시키고 처를 친가에서 제적처리한다.
- 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된 때에는 양가(養家) 입적에 갈음하여 그 양자를 호주로 하여 신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49】 미성년자의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실종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때에는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될 자가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자의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생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 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양친(養親)이 모두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生家)의 부모가 친권자로 되지 못하고 후견이 개시된다.

【문50】 현행 국적법 및 호적법규에 의할 때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모(母)가 외국인인 혼인외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父)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다.
-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④ 국적상실의 호적신고는 국적상실자의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적격자로서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적상실자 본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의 호적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결국 국적상실의 호적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 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바른 것은?

- ①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만을 기재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효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나, 토지가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④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무방하다.
- ⑤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였으나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2】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
- ② 건축물대장상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종물로 단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 없는 한 평가의 대상이다.
- ④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는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 ⑤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 3】 다음은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보전명령은 당연무효이다.
- ②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면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정당을 채무자로 한 정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④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가 되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4】 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이 500만원, 1번 저당권자 을의 채권이 1,500만원, 2번 저당권자 병의 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실무인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갑·을·병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갑-을-병의 순서)

- ① 500만원-1,500만원-0원
- ② 200만원-600만원-1,200만원
- ③ 500만원-1,500만원-0원
- ④ 200만원-1,500만원-300만원
- ⑤ 500만원-600만원-900만원

【문 5】 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이다.
- ③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 6】 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소액임차인이라도 이 법 시행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위 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상가는 건물가액의 1/3, 주택은 건물가액의 1/2한도 내에서 소액보증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건물가액은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문 7】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기일입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기일입찰기일에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입찰을 마감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② 매각기일에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표에 입찰가액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고 입찰자가 날인하더라도 입찰표는 무효이다.
- ④ 공동입찰자는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 ⑤ 입찰자는 같은 목적물에 관해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문 8】 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조세의 배당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다수설에 의함)

-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저당권의 설정일자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 ③ 가산금 및 가산세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및 가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 ⑤ 저당권설정일자과 관계없이 당해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한다.

【문 9】 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나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때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되고 배당요구종기 후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 ④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감으로 인하여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문10】 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무잉여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격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②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 ⑤ 집행법원의 무잉여통지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은 매각기일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한 경우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11】 다음은 부동산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되며,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도 적용된다.
-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 ③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동시에 매수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입찰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매수경쟁을 할 수 있다.
- ⑤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2】 다음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을 배당받은 후에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문13】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만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 ⑤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문14】 다음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
- ②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 ③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15】 다음은 차순위매수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② 차순위입찰자라도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
-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찰을 받은 자가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 ④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 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 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가 불허된 경우에는 다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문16】 다음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선행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의 권리로 본다.
- ②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 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문17】 다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 ③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는 매각에 의하여 말소의 대상이 된다.
-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후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사건의 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을 가진다.
- ⑤ 국제채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진행할 수 있고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소유자로 확정된다.

【문18】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지급이 아니다.
- ④ 매각대금지급 후 추후보완항고가 허용되어 항고심에서 심리하였으나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은 그때 적법하게 된다.
-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문19】 다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시에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할 수 없다.

【문20】 다음은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
-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문21】 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 ②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사문서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 ③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 ④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 ⑤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문22】 다음은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중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 ②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다.
- ③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문23】 다음은 가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여야 한다.
- ②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도 관할한다.
- ③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우선권이 보장된 임금채권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 ④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문24】 다음은 경매절차의 하자과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 ④ 확정된 중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25】 다음은 채권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야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먼저 송달된 시기에 생긴다.
-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금전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때에 다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때에는 후행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문26】 다음은 재매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재매각을 명할 수 없다.
- ② 재매각절차에도 중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③ 재매각기일도 일반의 매각기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재매각취소결정이 있으면 일단 효력이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이 부활하고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⑤ 재매각의 결과 매각대금이 재매각 전의 매각대금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문27】 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권원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범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불필요하며, 집행개시의 요건도 아니다.

【문28】 다음 중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 ②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
- ③ 배당요구신청한 임금채권
- ④ 배당요구신청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
- ⑤ 장차 매각절차를 완결할 때까지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문29】 다음은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한다.
- ③ 배우자의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
- ④ 지급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30】 다음은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여 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작위부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법원이 명한 강제금을 넘어서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④ 간접강제의 관할은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31】 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확정된 중국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1심변론종결 후 채무를 변제하고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④ 채무자는 집행권원상 채권자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상 채권에 대하여 승계가 있고 그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내용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32】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달특례를 적용받는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기입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선행사건이 취소됨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33】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② 경매기입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한 경우라도 토지부분에 대한 이전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인지 여부는 오로지 등기부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최선순위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34】 다음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나 뒤에 보완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 ③ 채권가압류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 ⑤ 집행채권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할 수 없고 새로운 압류절차에 의해야 한다.

【문35】 다음은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④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나,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 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 까지 같음)

- 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②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이를 준용한다.
- ④ 비송사건에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문37】 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바른 것은?

- ①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심문기일은 반드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실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촉탁할 수는 없다.
- ⑤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고할 수 있다.

【문38】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사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 이사에 관한 등기도 주말하여야 한다.
-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 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 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39】 다음 중 제1심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휴면회사의 해산·청산종결 등기
- ㉡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권한이나 대표권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 ㉢ 주주총회의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 ㉣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때
- ㉤ 회사의 청산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 등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 법원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40】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의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문41】 A.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B.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어 초과할 수 있다. 위의 두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인가신청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② A 인가신청은 합병을 하는 쌍방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 ③ B 인가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④ B 인가신청은 회사 성립 전후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두 경우 모두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문42】 자본금 100억 원인 갑 회사(존속회사)가 자본금 25억 원인 을 회사(소멸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 원, 합병비율 갑 회사 주식 1주당 을 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을 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갑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본점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갑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갑 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을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갑 회사의 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43】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주식을 이전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회사설립 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이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 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44】 무능력자등기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무능력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무능력자등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 ③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무능력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을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45】 과태료 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과태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 과료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 ② 과태료처분은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③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에게 금전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⑤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하고,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지 않는다.

【문46】 인사비송사건의 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② 법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며, 재판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③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사건의 신청인은 질권설정자이며,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47】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어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48】 신탁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③ 신탁관리인은 이른바 신탁의 이익의 관리권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④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⑤ 신탁사건의 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문49】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②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서 각 그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의 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식수보다 신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자본감소의 절차없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수를 종전의 주식의 수보다 감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50】 상호등기와 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에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 ②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관할공탁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 ④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상호가등기 후,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과목 50문】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30】 까지 같음)

- 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등기청구권자라 함은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 ③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④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 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문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3】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 ②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 4】 다음은 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대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5】 다음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부분을 제출하면 되므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서부분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호적(또는 제적)등·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등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
- ③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매매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에는 당사자의 표시로서 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 계약서 등에 날인된 인영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상의 인감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문 6】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갑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을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경우
- ②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③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 ④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 ⑤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문 7】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 ① 수인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 소유의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 ②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경료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③ 당사자가 위조한 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④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만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⑤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항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료된 유치권설정등기

【문 8】 다음은 상속등기와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처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한다.
- ②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재산분할협의서와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 9】 다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무기등기로 할 수 있다.
- 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관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언제나 무기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적법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병은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④ 갑·을 공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⑤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이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2번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문10】 다음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공유물분할,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농지에 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피상속인이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1】 다음은 부동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신청서에 멸실한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명의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12】 다음은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권리자를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②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회복등기 신청은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⑤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3】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분양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은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개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0동 0호 전유부분 취득”이라고 기재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14】 다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이며 1회로 제한된다.
- ④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⑤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문15】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중간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③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한다.
- ④ 현재 효력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16】 다음 중 등기부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입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 ②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
-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등기
- ④ 근저당권이전등기
- ⑤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

【문17】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등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때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8】 원칙적으로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②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 ③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 ⑤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문19】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승계집행을 할 수가 없다.
- ③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을이 알았다면 을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0】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문21】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으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도 된다.
-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2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나,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의무자도 변동된다.
-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 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23】 다음 중 등기 본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전세권설정등기
- ② 지상권말소등기
- ③ 저당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 ④ 소유권이전등기
- ⑤ 회복등기

【문24】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물건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 ② 관습상의 분묘지지권의 취득
-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취득
- ⑤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문25】 등기관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장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장의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기관장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도 이의사유를 삼을 수 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2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체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매매예약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먼저 가등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27】 다음은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②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이 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병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예고등기는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는 없다.
- ③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간에 현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승소한 원고가 등기신청포기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예고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수소법원이 착오로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상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수소법원의 촉탁착오에 인한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28】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② 모사전송에 의한 관할 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경우 한 사람이 동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1일 부동산 5개 이내가 원칙이다.
- ③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신청의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
- ④ 신청인이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급통수가 11통 이상이면 소정 양식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문29】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1필의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 ②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문30】 다음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에 분필 등의 변경사실이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표시변경등기일자가 매각허가결정 전이면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고 촉탁서에 변경된 사실을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므로 갑의 부동산을 을이 가압류한 후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을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 ④ 부동산에 대한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⑤ 예고등기는 권리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의 부담으로 되지 아니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공탁법 20문 】

【문31】 다음은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 까지 같음)

- ①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관할법원은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③ 관할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32】 다음은 계좌납입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납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 ③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없다.
- ⑤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은행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문33】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 ⑤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함이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문34】 공탁의 목적물로 유가증권이나 물품은 불가능하고, 금전공탁만이 가능한 경우는?

가. 재판상 보증공탁	나. 영업보증공탁
다. 가압류 해방공탁	라. 상법상의 보관공탁
마.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 ③ 다, 라, 마 ④ 나, 다, 마
- ⑤ 다, 마

【문35】 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7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시 을의 채권자 정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6천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후 정이 갑에 대하여 공탁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은 1억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 ② 갑은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 ③ 갑은 6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 ④ 갑은 1억원이나 7천만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공탁할 의무가 있다.
- ⑤ 갑은 1억원 또는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권리가 있다.

【문36】 소액공탁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는 소액공탁금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이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문37】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당사자인 경우의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 ②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 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문38】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령상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자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 ③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상당의 손해에 대한 채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 ⑤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위 담보권리자에 앞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위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문39】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
- ②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한다.
-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다.
- ⑤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문40】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41】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④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동·리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42】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자체로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43】 공탁서 정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서정정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의 정정도 허용된다.
- ③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되므로, 공탁서 원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당초 공탁시에 소급하여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새로운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44】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몰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회사도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도 당연히 소멸되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효력이 없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관례 및 실무 입장(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에 따르면,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물취공탁은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자가 되며, 피공탁자는 국가이다.

【문45】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관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복수의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몰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의 신고를 해야 하나, 사유신고 이전에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할 경우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문46】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된 것인 때에는, 그 후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 ②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채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더라도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는 추심권을 취득한다.

【문47】 변제공탁의 요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 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 ② 불법행위 채무자는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 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③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 ⑤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변제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문48】 공탁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법인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대상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과 저당권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 ③ 공탁서에 대리인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삭제할 수 있다.
- ⑤ 수용대상 토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자를 기재한다.

【문49】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탁서를 공탁관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 ②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그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 ③ 공탁관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 ④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문50】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가장 잘못된 설명은?

-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③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자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관할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